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준수사항 안내서



본 안내서 내용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필수 조건이므로 미이행 시 중도해지 됩니다.

사업 중도에 탈락(해지)되지 않도록

아래 모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여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각종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변조 할 경우,

그 사유·고의성 여부·정도 또는 경중에 관계없이 일반중도해지 처리됩니다.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_ [차례] -

l .사업개요	1
Ⅱ. 참여자 준수사항 1. 근로 2. 거주 3. 저축 4. 교육	2 4 5 6 8
Ⅲ. 만기 및 연장	11
IV. 약정의 해지	13
V. 제출서류	15
W. 자주하는 질문	16
V■. 참고	21
※ Ctrl () E 도시 타이피O크 의치느 내용 차기 가느	

사업개요

□ 내용

- O 주민등록 상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월 근로를 유지하며 매월 10만 원 저축 시 14만 2천 원(현금 10만 원 및 지역화폐 4만 2천 원) 매칭
 - 24개월 후 거주, 근로, 저축 사실 및 교육 3회 이수 확인 후 지급

□ 주요사항

구분	주요일정			제외대상*	
	선정월 (첫 저축)	_	만기월	지급액 수령월	
87] ('20년)	20년 9월	22년 8월	22년 9월	22년 12월	- 유사사업 수혜자(가구)·대상자(가구) ¹⁾ - 불법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9기 ('21년 상반기)	21년 6월	23년 5월	23년 6월	23년 9월	- 병역의무 이행자 ²⁾ - 국가근로장학생
10기 ('21년 하반기)	21년 10월	23년 9월	23년 10월	24년 1월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연금, 마이스터 통장, 복지 포인트) 참여자 또는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모집 당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유기계약직 제외)

* 제외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중도해지 대상입니다. 해당 사실을 재단에 알리지 않아 재단이 사업 종료 시에 확인한 경우라도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외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지신청(13~14쪽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페이지

구분	주소 및 계정 등	비고
사업 홈페이지	account.jobaba.net	암호 찾기, 시스템 오류 등 문의: 1661-9101
사업 인스타그램	ggwf9360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ggwf.gg.go.kr	

- * 관련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031-267-93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본인 상담이 원칙입니다. 유선상담이 가능한 (주말·공휴일 제외) 평일 9시~12사·13시~18시 중 근로로 인하여 참여자 본인의 유선상담이 어려울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 시급하지 않은 단순 질의의 경우 **홈페이지 1:1 문의**: 평일 기준 2일 내 답변 드립니다.
 - 해지 등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가족 등 대리인 유선상담**: 대리인에게 본인 기수, 사업 내용 등을 알려 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관계 확인을 위한 재단 측의 참여자 개인정보 관련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¹⁾ 유사사업이란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저축 계좌, 고용노동부 청년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타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사업"을 말함.(상세 내용 3쪽 참조) 이 중 보건복지부 사업과 광주 13통장을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참여자 본인 뿐 아니라 가구원의 중복참여 또한 불가함.

^{2)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www.mma.go.kr/contents.do?mc=usr0000041)에서 정의하는 모든 형태의 복무로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 경찰·소방관, 해양경찰), 사회복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을 말함.

참여자 준수시항

□ 거주·근로·저축· 동시 충족 및 교육 3회 이수

- O 사업명 및 약정서에 의무사항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 사업명: 경기도 거주·근로·저축 동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관련 의무 사항	매월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 거주	매월 근로	매월 저축

- 약정서: 참여자는 "약정기간 동안 (경기도 거주·근로·저축 외) 온·오프라인 교육을 2년 가 총 3회 이상 이수하여야"합니다.
- O '근로, 저축, 거주, 교육'의 기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각 조건의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만기 기준	중도해지	비고
거주	참여 이후 12개월 이상	참여 이후 12개월 미만	- 주민등록 상 경기도 거주 ※ 타 시·도 전출 즉시 중도해지 대상, 단, 전출 30일 이내 재전입 시 경기도 거주로 인정
근로	실제 행위	실제 행위	- 최소 12개월 근로 유지
저축	1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매월 20일에 본인저축액 10만원 납입 ※ 12회 초과 미납 시 중도해지 대상
교육	3회 이상	3회 미만	- 총 3회 이수

O 만기기준의 충족이 지원금 전액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만기 기준	중도해지 (상세내용 13쪽 참조)
거주	24개월 근로·저축·경기도 거주 시 지원금 전액 지급	 사업 참여 12개월 <u>이후</u> 전출 시 = <u>전출시점까지</u> 근로·저축 개월 수 만큼의 지원금 지급 사업 참여 12개월 <u>이전</u> 전출 시 = 지원금 전액 미지급
근로	12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12개월 이상 근로 증빙, 실 저축 12회 이상 시	12개월 미만의 근로 증빙 시 <u>지원금 전액 미지급</u>
저축	<u>거주·근로·저축</u> <u>동시충족 개월 수 만큼의</u> 지원금 지급	12회 미만 저축 시 <u>지원금 전액 미지급</u>
교육	총 3회 이수 시 <u>거주·근로·저축</u> 동시충족 개월 수 만큼의 지원금 지급	3회 미만 이수 시 <u>지원금 전액 미지급</u>

□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경기복지재단 알림

- O 해지사유(병역의무 이행, 전출 등) 또는 정보변경(거주지 이전, 연락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서류등록 또는 정보변경 이후 경기복지재단에 유선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이직 등 근무지 변경, 월 급여 변동 등은 알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 * 경기도 내 주민등록 이전, 연락처 변경 등은 유선으로 알려주실 필요는 없으나 정보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변경으로 인한 안내사항 전달 누락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 제외대상에의 미포함

- O 공고 및 약정서 상 제외대상(유사사업 수혜자(가구) 및 대상자(가구), 불법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종사자,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포함 시 중도해지 처리 됩니다.
 - 보건복지부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가입한 수혜자 뿐 아니라 단순 대상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일 시 또는 참여자 본인이 아닌 타 가구원이 가입되어 있을 시에도 제외대상입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또한 참여자 본인이 아닌 타 가구원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 * 단, 광주 13통장의 경우 가구단위 사업이 아닌 개인단위 사업이므로 가구원이 해당 사업에 참여중일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 유사사업 중복 시 원칙(중도해지)의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

구분	사업기간 및 자격이 겹치지 않을 경우 또는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해지한 경우			
	당시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였으나 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청년통장에 선정 되었으며, 선정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사업	# 청년통장 선정 이후 보건복지부 타 사업에 참여한 경우 중복 불가 = 청년통장 적립금 수령 시 보건복지부 지원금 수령 불가, 수령 시에도 이후 환수 조치			
(희망키움 I·II,	본인 또는 타 가구원이 청년통장 선정 전 보건복지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저축)	* 만기조건이 탈수급이므로 수급자로서 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 만기 시 탈수급 이후 단순 저소득자로서 청년통장에 참여 = 사업기간과 자격이 겹치지 않으므로 중복 가능			
	보건복지부 사업 참여 도중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			
	# 지원금을 일부 수령한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중복 불가 = 두 사업 중 (가입일이 늦은) 후순위 사업에서 해지처리, 중복지급한 경우라도 이후 환수 조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해지한 경우 외 해당사항 없음,			
기타 지자체	전수(全數) 중 복 불가 = 해지처리, 중 복 수령한 경우라도 이후 환수 조치			
자산형성사업				

* 국가 및 지방정부는 선정 시와 만기 시 중복참여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복 참여 사실을 참여자가 고의, 실수로 누락하여 중복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완료하여 모든 사업의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라도 가입일이 늦은 사업의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1 근로

□ 의무사항

- O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이므로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근로 시 지원금이 지급되며, 미근로 기간 중 매칭된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12개월 거주, 저축 및 교육 3회 이수 전제 시) 12개월 근로 시 경기도 지원금 전액 지급이 아닌 12개월의 경기도 지원금 지급

□ 기간별 비교

처리구분	근로기간	경기도지원금
중도해지	12개월 미만	미지급
특별중도해지	12개월 ~ 23개월	
만기지급	24개월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 증빙서류

- O "사회보험" 가입 유형 등*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상세 내용 15쪽 참고)
 -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아르바이트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보험료 100%를 부담하는) 기타가입자, (사업자인) 자영업자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u>기타 서류</u> 인정 불가
지역가입자,	4대보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피부양자 등	미가입	(하지 않는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담당 연락처 필수
자영업자	_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과세표준증명	_
해외취업자	_	비자(취업 또는 워킹홀리데이) 및 기관증명서(영문)	근로기간 필수

※ 근로기준 권고 관련 안내

- 본 사업은 근로의지 고취 및 저축습관 함양을 위하여 **매월 근로소득 일부를 매월 저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이 월 저축액 1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월 근로시간이 현저하게 짧을 경우 해당 개월의 인정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동일한 사유로 특정 월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근로소득이 높다고 하여도 미근로한 월에 이를 (소급 또는 장래)적용하여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드릴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 거주

□ 의무사항

- O "경기도" 청년 대상 사업이므로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 거주 여부는 <mark>주민등록 상 주소를 기준으로</mark> 합니다. 또한 타 시·도 전출 후 30일 이내에 경기도로 재전입 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로 인정됩니다.

□ 기간별 비교

처리구분	경기도 거주기간	경기도지원금	
중도해지	12개월 미만	미지급	
특별중도해지	12개월 ~ 23개월	(그리 ᅯᄎ ᆌᄌ) 두기 ᄎᄌ ᆌᆌᆔᄏ ᅱ이	
만기지급	24개월	·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 증빙서류

- O 주민등록초본
 - 정부 24 방문 서비스 선택 발급
 형태 중 "발급" 선택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 * 주소 변동내역, 주민등록번호 중 어느 하나라도 없을 시 인정 불가



3 저축

□ 의무사항

- O 본인 저축액 납입을 확인, 경기도 지원금을 지원하는 "통장"사업으로 24개월 간 반드시 매월 20일 자동이체 등으로 저축하셔야 합니다.
 - 잔액 부족 등으로 20일 자동이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말일까지 추가 저축이 가능하나 저축이 지연된 만큼 만기일 또한 지연됩니다.
- ※ 경기복지재단은 참여자 관리 업무를 하는 곳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일체 권한이 없어 **자동이체 설정(변경), 개인 계좌번호 확인 등 참여자 금융정보의 확인이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확인 및 자동이체 설정(변경)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참여자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간별 비교

처리구분	저축기간(횟수)	경기도지원금
중도해지	12개월 미만	미지급
특별중도해지	12개월 ~ 23개월	(그리 워츠 리즈) 토기 초조 리카마리 뒤의
만기지급	24개월	·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 약정서에 명시된 고정이율을 적용하나, 중도해지 등 24개월 이전 수령 시 또는 24회 미만 납입 시 별도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적금 특성 상 해지 전 이자 확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합니다.**

□ 일자별 비교

O 본인 저축액은 입금된 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의 저축으로 인정됩니다.

	입금일자	내용	경기도 지원금	비고
	1~20일	정상입금	다음 월	
매월	21~말일	지연입금	10일 매칭	지연일만큼 만기지급일 또한 연기(누적)
	다음달 1~말일	미입금	매칭 불가	

* 불가피한 사유(잔액 부족 등)로 미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월은 저축으로 인정되지 않아 경기도 지원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이 불가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미저축 다음 달에 추가 입금 요청 및 경기도 지원금 지원 요청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합니다.

□미납

O 해당 월 내 저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또는 누적되어 참여기간 동안 미납 횟수 12회 초과 시 중도해지 처리 됩니다.(12회 미납 가능, 13회 미납 시 해지)

< 저축내역 등 확인 방법 >

O 저축계좌 확인:

사업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통장 정보

마이페이지

HINEM		新さまな 25M	게라 프회나에		신경 및 서류등록
ল্ম সঙ্গ্রম					
5.4km	14+16-E112-E11	매달 20일, 참여자	개인통장에서		
NOW	阿斯森 (1) 4	이 계좌로 10만원이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	
PRINCE.	304	>			
Motor	0312679360				

O 저축내역 및 지원금 매칭내역 확인:

사업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계좌조회 내역

마이페이지

나의정보		정변통장 정보	계좌 조회내역	신청	및 서류등록
계작 조회내	I역 (H 참이자 저축금액의 경우 1~2일	이후 얼룩도 됩니다.)			
회자	임금일	임금액	일금자	찬액	비고
8	2021-04-20 04:20:30	100,000€	김청년	800.000 E	압급
77	2021-08-22-04-90-92	100,000월	김철년	700,000월	임금
6	2021-02-22 04:29:09	100,000	김청년	600,000 %	일급
5	2021-01-20 04:20:42	100,000원	김철년	500.000원	일급
2	2020-12-21 04:29:38	100,000€	김청년	400,000 <u>%</u>	임금
3	2020-11-20 04:2053	100.000 <u>9</u>	김청년	300,000€	일공
2	2020-10-20 04:20:05	100,000	김청년	200,000월	일급
(10)	2020-09-01 11:42:30	100,000 %	김청년	100,000원	일반산
계작조회대	역 (< 지원급의 경우 다음달 10일 지;	B됩니다)			
회자	입금일	일금액	얼굴자	잔액	비교
8	2021-05-10 14:0656	142,000원	경기도지원급	1,136,000%	일곱
7.	2021-04-09 11:08:46	142,000船	경기도지원급	994,000巻	입금
6	2021-03-10 15:34:34	142,000월	경기도지원급	852,000원	임급
5	2021-02-10 11:09:25	142,000원	경기모지원을	710.000월	일골
4 2021-01-08 16:05:49		142,000원	경기도지원급	568,000€	일급
4	3 2020-12-10 15:07:45 142:000원		경기도지원급 426.00	426.000 %	일곱
3	2020-12-10 15/07/45	1420005			
	2020-12-10 15:07:45	142000월	경기모지원급	284.000원	임급

- 저축내역은 저축일 1일 경과 후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매칭지원금은 다음 달 10일 지원 되며 15일 이후 확인 가능
 - * 자동이체일인 2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자동이체를 설정한 계좌가 농협중앙회 통장일 시 20일 이후 첫 업무일에 자동이체되나, 지역농협 등 농협중앙회 외 다른 은행의 통장일 시 참여자 본인이 직접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입금 필요

※ 미납 관련 안내

매 20일 기준, 미저축자를 대상으로 미납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농협 측 저축명단확인-공문 송부 등 복지재단으로 해당 자료가 넘어오는 데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매월 22~26일 중 "20일 기준"으로 미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20일 이후 추가 저축을 하셨음에도 20일 기준 미납 문자를 받으신 경우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4 교육

□ 의무사항

- O 참여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안내하는 교육을 반드시 24개월 간 총 3회 이수 하셔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후 증빙서류(수료증, 이수확인서 등)를 아래와 같이 사업 홈페이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횟수별 비교

처리구분	이수 횟수	경기도지원금			
중도해지	0 ~ 2회 이하	미지급			
특별중도해지	3회 이상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 참여자 본인의 사망 제외, 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교육 3회 이수를 완료하여야 경기도 지원금 지급 가능			
만기지급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 교육 종류

구분	교육과정	시기
온라인	GSEEK: 경기도청년통장_사회초년생을 위한 재무심리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경기도 청년통장(필수교육)	연중
오프라인	- 연도별 계획에 따라 운영 내용 상이	상시 * 교육 진행 시 문자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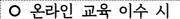
※ 오프라인 교육 관련 안내

현재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교육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개설된 온라인 강의 2개를 먼저 이수하시고, 만기 전 추가로 개설되는 온라인(실시간)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추가 강의 개설 전 (사망 제외) 특별중도해지를 희망하시는 분은 해지 전 유선상담 시 추가 교육을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이수 증빙방법 >

O 오프라인 교육 이수 시

- 교육 참여 시 서명 등 참석자 확인 시행 후 경기복지재단에서 일괄 등록하므로, 참여자의 별도 증빙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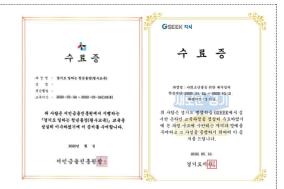
- 1. 교육 진행 사이트에서 교육 이수
- (1) **GSEEK**: www.gseek.kr 접속 후 "의무과정 경기도청년통장_사회초년생을 위한 재무심리" 수강



②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edu.kinfa.or.kr 접속 후 "온라인 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 [경기도] 청년통장(8) - 경기도 청년통장(필수교육)" 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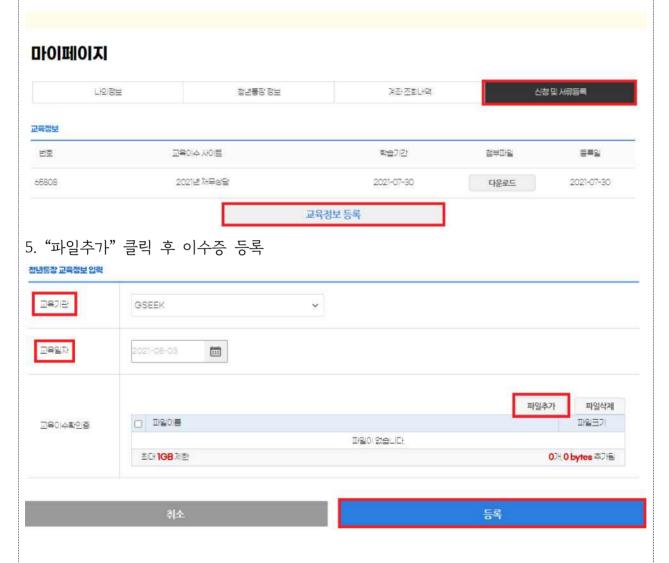


- 2.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수료증 다운로드 및 저장
- 나의 학습관리, 내 강의실 등
- 기관명, 직인 등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



- 3. 사업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로그인
- 4. 메뉴이동(마이페이지 신청 및 서류 등록 교육정보 등록)

내로 경기 · 공정한 내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8기 이후)



6. 첨부파일 다운로드 클릭 후 등록한 이수증이 2. 예시와 같이 기관명, 직인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만기

□ 개요

O 만기 시 적립액 지급에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구분	마지막 저축일	마지막 매칭일	만기일	만기 후 2개월 이상	만기 후 3개월	심의 이후
내용	만기신청 절차 안내	만기 신	청 접수	서류 검토	결과 공개 지급심의	적립액 지급
87] ('20년)	'22.08.20.	'22.09.10.	'22.09.20.		'22.12. 초 '22.12.19.	
9기 ('21년 상반기)	'23.05.20.	'23.06.10.	'23.06.20.	2개월 이상	'23.09. 초 '23.09.19.	업무일 기준 2주 이내
107] ('21년 하반기)	'23.09.20.	'23.10.10.	'23.10.20.		'24.01. 초 '24.01.19.	

※ 만기 신청 접수, 검토결과 공개, 지급 심의 등의 일정은 경기도 및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내용

① (마지막 저축월) 절차 안내

- 만기 지급에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등을 안내 드립니다. 신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드리는 것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② (만기월 초·중순) 만기 신청 접수

- 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24개월간의 근로, 경기도 거주 등 약정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약 2~3주간 접수합니다.
- ※ 본 신청기간 내의 서류 완전구비 제출 여부→24개월 만기 여부→매월 저축일 준수 여부 순에 따라 지급됩니다.

③ (만기월 하순~만기 후 3개월 후 초순) 서류 검토

- 근로, 거주, 제외대상 미포함 등의 약정사항 이행 여부 검토를 위한 서류 확인이 진행됩니다.
 - * 보완이 필요한 참여자 개인별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서류를 완전히 구비한 날이 신청일이 됨에 따라 지급순서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개별 연락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제출서류 보완이 불필요함을 의미합니다.
- * 기수별 최소 2천 명, 최대 5천 명에 달하는 참여자 전원의 서류를 10명이 채 되지 않는 담당 직원들이 최소 2차에 걸쳐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지원금을 실수 없이 정확히 지급하여 드리기 위함이오니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 직후 타 참여자에 앞선 검토 요구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④ (만기 후 3개월 후 초순) 검토 결과 공개

- 홈페이지를 통하여 결과가 공개됩니다.
 - * (검토결과 공개 예시) 20개월 만기자의 경우,

인정 개월 수	저축	근로	거주
20/24	22/24	20/24	24/24

- * 최대 만기는 24개월이며, 위 사례는 <u>단순 예시</u>입니다. 24개월 간 매월 저축, 매월 근로, 매월 주민등록 상 경기도 거주시 및 24개월 간 교육 3회 이수 시 24개월 전 기간이 인정됩니다.
- ⑤ (만기 후 3개월 직후) 지급 심의
 -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합니다.
 - * 지급 심의 전날까지 근로·거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또한 미제출 시 저축액은 법원에 공탁 처리 됩니다.
 - * 결정의 주체는 경기도·재단이 아닌 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 이후 추가 근로증빙 등 추가 서류 제출 및 인정 요구, 지급-연장 선택 번복 등 변경사항은 일체 반영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 ⑥ (심의 이후) 지급
 - 업무일 기준 2주 내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 참여자 사망에 따른 특별 중도해지 외 본인 이외 타인명의로 지급은 불가합니다.
 - ※ ④ 예시의 20개월 만기의 경우 본인 저축액 원금·이자 전액 및 지원금 원금·이자 20개월 분 지급 (본인 저축액 2,200,000원 + 경기도 지원금 2,840,000원(현금 2,000,000원 및 지역화폐 8,400,000원) + 이자³⁾

³⁾ 적금 특성 상 해지 전 이자 확인이 불가합니다.

IV

약정의 해지

□ 구분

- O "II. 참여자 준수사항" 위반 등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해지됩니다.
 - 참여자 미고지 등으로 재단이 **해지사유를 참여기간 만료 후 확인한 경우라도 중도해지**로 보고 만기지급액 전액이 아닌 해당 지급액만큼만 지급합니다.
 - 지급은 업무일 기준 최대 14일이 소요되며, 중도해지자는 향후 타 기수 선정 등 사업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유형	해지사유	지급액
일반 중도 해지	 참여자가 저축 및 근로 12개월 이상 완료 전 자발적으로 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참여자가 저축기간 동안 총 12회 초과하여 저축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참여자가 저축기간 12개월 경과 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주요 정보 누락 및 허위고지 등으로 참여자 선정 또는 만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참여자가 저축기간 동안 3회 교육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참여자가 일신 상 변동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저축을 완료한 경우 참여자가 사업종료 시 12개월 이상 근로유지 여부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참여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본인 저축금 및 해당 이자
특별 중도 해지	- 참여자가 저축기간 12개월 경과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 남성 참여자의 병역의무 이행, 여성 참여자의 임신·출산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 참여자가 저축 및 근로 12개월 이상 완료 후 자발적으로 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본인 저축금 및 경기도 지원금, 해당 이자

※ 사망을 제외한 특별중도해지 시 교육 3회 이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

- O 근로, 거주, 저축이 동시 충족되는 개월 수 만큼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 예시 1. (12개월 경과 후 전출 시) 8기 약정 후 14개월 차인 '21.10. 타 시·도로 전출, 14개월 매월 근로하였으나 10개월 저축·4개월 간 미납한 경우 → 지원금 10개월분 지급
- ** 예시 2. (시점 상관없는 병역의무이행·임신 시) 9기 약정 후 2개월 차인 '21.07. 병역이행 처분, 2개월 간 저축하였으나 미근로한 경우 → 지원금 미지급
- *** 예시 3. (저축 및 근로 12개월 후 자발적 신청 시) 10기 약정 후 13개월 차인 '22.10. 해지희망, 13개월 간 경기도 거주 및 매월 저축하였으나 10개월 근로·3개월 미근로한 경우 → 지원금 미지급 (최소 2개월 추가 근로 후 특별중도해지 신청가능)

□ 신청

O 재단 유선 상담을 통하여 해지 의사 및 사유를 알린 후, 서류를 준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유형	필요서류
일반중도해지	해지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개인 통장 사본, 자동이체해제내역
특별중도해지	1. (공통) 상기 일반중도해지 시 제출 서류 및 지역화폐 지급 신청서, 해지시점까지의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해지시점까지의 근로증빙 서류 3. (사유별) 상기 공통서류 외 사유에 따라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12개월 이후 전출 시, 저축·근로 12개월 이후 희망 시) 해당사항 없음 (참여자 사망 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병역의무 이행 시) 병역의무 이행 증빙서류 (임신·출산 시) 병원 발급 증명서(진단서, 소견서, 임신확인서 등)

< 중도해지 신청 방법 >

- 1. 경기복지재단 유선상담(031-267-9360)
- 2. 사업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로그인
- 3. 메뉴이동(마이페이지 신청 및 서류 등록 중도해지 등록)
- 4. 신청서 양식
 - 1) 다운로드 2) 작성(자필, 타이핑 모두 가능) 3) 서명 또는 날인(자필, 전자 모두 가능)
 - * 전자서명은 가능하나 단순히 본인 이름을 타이핑한 것은 불가
- 5. 작성한 해지신청서를 PDF 혹은 이미지(.jpg 및 .png) 파일로 저장
- 6. "파일추가" 클릭 후 신청서 및 해지종류에 따른 기타 서류 등록
- * 각종 서식은 사업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신청 및 서류등록에서, 증빙에 필요한 대부분 서류는 정부24(www.gov.kr) 서비스-신청·조회·발급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의 인쇄가 불가한 경우는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하시거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 공인인증서, 오프라인 발급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후 발급되므로 재단에서 대신 발급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구	<u> </u>	서류	사이트명	제출시기	비고		
		서스	1	해지신청서	사업 홈페이지 (account.jobaba.net)	해지 신청 시			
				(1순위)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u>또는</u> 고용보험일용 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 mwel.or.kr)				
	근로	ភ្ជា	ក្ស	回	외	(2순위)거주자의 사업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고용주 발급 (참여자 개인의 홈택스 접속발급 시 이름이 마스킹 되어 본인확인 불가)
		고 용 자	(택 1) ⁴⁾	(3순위)고용임금확인서	사업 홈페이지 (account.jobaba.net)	참여 중 재단 요청 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회사 자체 양식을 활용하되 사업자등록번호·담당자연락처, 직인(날인) 필수 포함)		
				(4순위)근로계약서	(입사 시 사업주 작성)	참여 종료 후	근무종료일 필수 포함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정부24(www.gov.kr) 또는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적립금 신청 시 ⁵⁾ , 특별중도해지 신청 시			
증빙		자영업자		(필수 1) 사업자등록 증명 <u>또는</u> 폐업사실증명 (필수 2)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정부24(www.gov.kr)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도별 증빙이 아닌 월별 증빙자료 제출		
빙		해외 취업자		(필수 1) 비자 (취업 또는 워킹홀리데이)	-		관광비자-위·불법 근로, 학업비자-조교 근무경력 인정 불가		
				(필수 2) 기관 발급 재직증명서(영문)	해당 기관		근로기간 필수 포함, 영문 외 언어일 경우 번역 공증본 제출 필요		
	거주		l주	주민 등록 초본	정부24(www.gov.kr)	특별중도해지 처리 시, 참여 종료 후 적립금 신청 시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필수 포함		
	교육		교육 교육이수증		참여자 본인 교육이수 사이트 (GSEEK www.gseek.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edu.kinfa.or.kr)	교육 이수 즉시	재단에서 개최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 증빙 불필요		
		ᄌ	l축	별도 증빙 불필요			사업 홈페이지 (account.jobaba.net)에서 본인 저축액 및 경기도 지원금 내역 확인 가능		
	,		대상 포함	남성의 경우 필수, 병적증명서	정부24(www.gov.kr)	참여 종료 후 적립금 신청 시			

^{4) 3~4}순위 제출 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할 수 있음.

⁵⁾ 사업 참여 도중 재단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의 근로증빙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 종료 후 24개월간의 근로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자주하는 질문

- 1) 참여자 저축계좌와 경기도지원금 계좌가 경기복지재단명의로 개설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참여자의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매월 재단에서 참여자의 저축 여부를 확인한 후 경기도 지원금의 매칭 절차가 필요하여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하되, 참여자 이름이 함께 부기됩니다. (예: 경기복지재단 홍길동)
- 2) 저축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경기도지원금은 언제 지원되나요?
- ▶ 청년통장 사업은 참여자 본인이 사업에 참여한 후 <u>총 24개월 동안 저축</u>하게 됩니다. 참여자 저축일은 매월 20일이며, 다음 달 10일 경기도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u>첫 저축은 직접 납입하셔야 하며, 2~24회차 저축은 자동이체를 설정</u>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지원금은 매월 저축한 참여자에 한하여 근로를 했다는 가정 하에 매칭 됩니다. 그러므로 저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축 하여 매칭된 경우라도 향후 해당 월의 근로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3) 참여자 본인이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자동이체 설정 또는 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참여자 본인의 NH농협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u>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 설정</u> <u>또는 변경을 진행</u>해도 됩니다. 다만, 인터넷뱅킹 시 설정 오류로 인한 저축액 미입금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위 같은 방법이 불가하여 <u>부득이하게 대리인이 방문해야 될 경우, 방문하려는</u> 은행에 사전 연락하여 대리인 방문 가능여부와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4) 저축일(20일)에 돈을 못 넣으면 어떻게 하나요?
- ► 저축일(20일)에 저축하지 못할 경우 <u>21일부터 해당 월 말일 까지 추가저축</u> 가능하나, 자동이체일 기준 저축 지연일수만큼 만기일 또한 지연됩니다.

- 5) 10만 원 중 일부만 또는 다음 달 저축액까지 10만 원 이상 저축 가능한가요?
- ▶ 불가합니다. 참여자는 매월 10만 원씩만 저축 가능합니다.

참여자가 자동이체를 설정한 통장에 1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 있을 경우자동이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를 거치지 않고 참여자 저축계좌로 직접 저축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도 1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은 입금되지 않습니다. 본인 통장에 10만 원 이상 입금하여도 참여자 저축계좌로의 자동이체는 월 10만 원씩만 진행됩니다. 물론, 자동이체를 거치지 않고 참여자 저축계좌로 직접 저축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도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은 입금되지 않습니다.

6) 저축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자동이체를 설정한 계좌가 농협중앙회 통장인 경우 다음 날 출금됩니다. 참여 자의 계좌가 농협중앙회 외 지역농협을 포함한 기타 은행의 계좌인 경우는 저축계좌로 직접 입금하셔야 합니다.

7)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저축금액을 찾아갈 수 있나요?

▶ 참여를 유지하며 본인 저축금 일부를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본인 희망 시 중도해지 및 이에 따른 저축액 전액 반납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에 앞서 유선상담이 진행되며, 중도해지 신청서 접수 후 지급까지 약 14일(업무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시점 까지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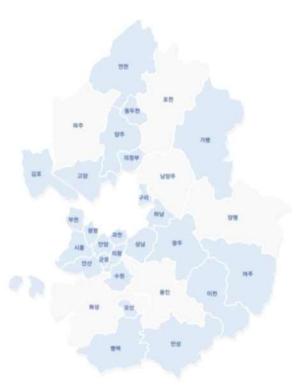
8) 근로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복지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사업 완료 시 서류 제출로 근로증빙을 해야합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4쪽 및 15쪽 참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해당 서류에 직장가입자가아닌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서류를 내는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관련 서류의 내용(근로기간, 서명· 날인 포함)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복지재단 담당자가 근로사실 확인을 위해 근무지에 방문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경기도가 아닌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 등록만 옮길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 ▶ 본 사업은 경기도 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u>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u> 중도해지 됩니다. <u>거주 기준은 '주민</u> 등록'입니다. 실 거주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주소가 타 시·도일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전출 시점이 사업 참여 후 12개월 경과 전이라면 본인 저축액 (이자 포함)만 지급되며, 12개월 경과 후라면 해당 월만큼의 경기도 지원금 일부 또한 지급됩니다. 다만, <u>전출</u> 후 30일 이내 경기도로 재전입 할 경우,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경기도는 28개 시·3개 군, 총 31개 행정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경기도 외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경기도 내 이사(예. 수원시→ 성남시)는 해지사유가 아닙니다.
- 10) 경기도가 아닌 타 시·도의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 ▶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근무하시더라도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 11) 병역의무 이행을 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 ▶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소방관, 의무경찰, 해양경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대 등 병역의무 이행 시 특별중도해지 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 중이었으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반드시 복지재단에 이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선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사업 종료 후·만기적립금 지급 전 해당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도 약정은 해지되어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2) 개인정보(거주지, 연락처 등)가 변동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여자가 "사업 홈페이지(account.jobaba.net) → 마이페이지 → 나의정보"에서 변경 후, 이 사실을 복지재단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알려야 합니다. 변경 및 고지를 하지 않아 경기복지재단에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교육안내 등)를 받지 못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3)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이수하나요?

- ▶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진행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연중 운영하고 있어 상시 이수가 가능하며(8쪽 교육 참조), 오프라인 교육은 진행 시 별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14) 사업 참여 중 실업자, 구직희망자 대상 제도(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구직 활동 지원금 등) 중복수혜가 가능한가요?
- ▶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실업급여의 대상은 "실직자"이므로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 <u>동시에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u>. 다만, 12개월 범위 내 미근로 하는 도중에는 수급 가능합니다. <u>취업성공패키지 또한 취·창업자의</u> <u>참여를 제한</u>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참여 시 참여수당 수령 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사업 참여 중에도 동시에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15시간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참여자의 경우,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중복 수급 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단발성 지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과 유사하게 장기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유사사업의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 계좌)가입가구 및 대상가구, 고용노동부 사업(청년내일채움 공제)·중소벤처기업부 사업(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타 지방자치 단체 유사 통장사업 참여(수혜)가구·참여(수혜)자 등은 참여 불가합니다.

15) 휴직 기간은 근로로 인정되나요?

▶ <u>사유, 유·무급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휴직은 '실직'이 아니므로 근로로 인정됩니다.</u>

- 16) 사업 참여 중 자동이체 통장을 변경할 수 있나요?
- ▶ 변경 가능합니다. 직접 해당 은행 방문 및 인터넷 뱅킹으로 기존 통장의 자동이체 해지 후 변경을 원하는 통장으로 새로이 자동이체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설정 또는 변경 등 금융 관련 업무는 복지재단에서 수행 불가하며, 참여자 본인이 은행 방문 또는 은행 사이트 접속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 합니다.
- 17) 선정 당시보다 급여가 올랐는데 재단에 알려야 하나요? 이직했는데 재단에 알려야 하나요?
- ▶ 본 사업은 '근로'가 중요하며, 근로지나 소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은 선정 당시 기준입니다. 급여 인상 등에 따라 가구소득이 변하더라도 사업 참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재단에 알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무지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알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단, 향후 원활한 근로증빙을 위하여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닐 경우 이직 시 전 직장에서 근로 증빙 자료(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를 미리 발부받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재단에 알림 의무가 있는 사항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들, 휴대전화 등 연락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8) 당분간 저축이나 근로가 불가합니다. 해지신청을 해야 하나요?

▶ 24개월의 저축기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12개월 간 미납 또는 미근로가 가능합니다. 12개월의 범위 내 재단의 사전 허가나 알림 없이 미납 또는 미근로하실 수 있습니다. 전출, 임신·출산, 병역의무 이행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해당하지 않는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 12회 이상 저축 시에만 경기도 지원금지급이 가능하오니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 '근로', '노동' 등 정확한 "일"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제2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u>임금(대가성으로 지급</u> <u>하는 봉급 및 일체의 금품)을 목적으로</u>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정신 및 육체노동)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또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경우나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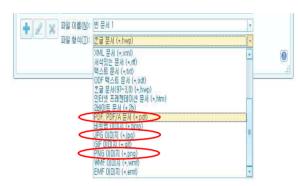


참고

1. PDF 및 이미지 파일 저장 방법

- O (1안) 인쇄 후 자필 작성·서명 후 스캔 시 pdf로 자동 저장
- O (2안) 한컴오피스 한글 활용, 타이핑 및 전자서명 후 (2-1안)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





(2-2안) "print screen" 키로 캡처 후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



O (3안) 인쇄 후 자필 작성·서명 후 휴대전화 사진 촬영, 본인 전자우편·PC카톡 등으로 송부 후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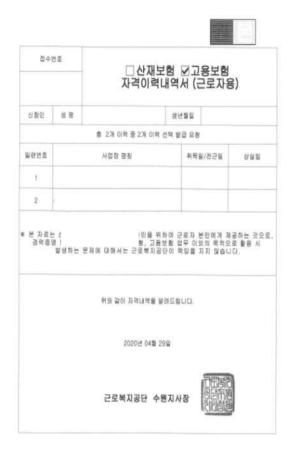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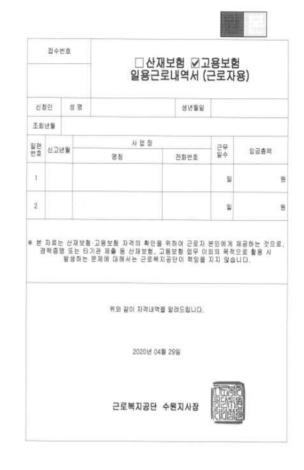
- O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O (온라인) 정부24(www.gov.kr)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개인민원-증명서 발급 및 확인 -자격득실확인서 → 조회조건 "직장가입자" 선택

931125-	1		
작끊가입	1자 🗸		
		_	
	18.84	N. Company	
1/1			133000
발급번호 :			• 10100100000
	건강보험자격목	득실확인서	
at of all Tayl	성명	주 번 등 목 번 3	ž.
확인청구자			
	자 격 득 실 확	인내역	
No 가입자구분	사업장면칭	자격취득임	자격상실임
1 지역세대회		2018.	
일의계속의부당기	╲ 조회조건을 "전체"로	선택한 경우	2018.
3 적장의무양자) 직장가입자로 표시도	l어 있지 않는 기간 <mark>.</mark>	1018.
4 적장가입자	고용임금확인서 등	기타 서류로 증빙 필	Q 1016,
5 목장의무양자		2011.*	3016.
6 সংগ্ৰাহাল		1902.	1011.
7 직장의부당자	9	1987.4	1995.
		18	
	2018.11.	26	
	국민건강보험공	단 이사장	
	독일·상실일은 실제의 사업장 입시	일 · 회적임과 다음 수 있습니	
	면건장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		

3. 직장가입자 외 기타 가입자 근로증빙 서식 및 예시

- O (1순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total.kcomwel.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 개인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보험 자격 조회







O (2순위)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고용주에게 발급 요청 후 직인(날인) 필수

징 수 의무자		업 자 등 민(법인)			100 100 100 100	인명 또는 상호 내지 또는 주소	③성명	
	®상		CONTRACTOR OF THE PARTY OF THE	Ď.			⑦사업자등록변호	
소득자		업장:					100000	
	⑨성m주			명 소			⑩주민등록번호	
(2) 업송구	-	9409	-	포 작성방법 참	T			
(3)XI	- 188	(B)소·	TARGETON.	* 4899 8	22	원	천 진 수 세 액	
연 월	No. of Concession, Name of Street, or other	94	뭠	⑥지 급 총 액	16세울	00소 독 세	천 짐 수 세 액 (3)지방소득세	(92)
	1	2018	1	10,58	3.3	1.50	U9시장고국제	Qave Cave
	2		2	429,500	3.3	(100	91	7,7
	3	1 1	3	95, 66	3.3	1,68	100	6.1
	4	1 1	4	10,75	3.3	4.40	- 4	9.0
	5		5	85.477	3.3	3-500	50"	2.5
	6		6	60.000	3.3	4.80	186	7/4
- 0	7		7	10,394	3.3	4,800	100	100
	3		8	15,000	3.3	0.000	Ad	V
	9	1 1	9	19.54	3.3	4.44	40	50
10)	1 1	10	10, 340	3.3	6.40	11.	-11
11	1	1 1	11	10.1%	3.3	8.3	7.10	Ú.
12	2	1 1	12	III. No.	3.3	8.87	200	5.4

-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정수의무자란의 (6주민(법인)등록번호은 소득자 보존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세역이 소역부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3·1)원인에 세역을 "0"으로 적습니다. 4. 您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제어야 합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엄중코드	종목	업종코드	총목	업종코드	중목
940100	저술기	940305	성약가	940904	직업문동가	940910	다던게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200	화가관련	9406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실부름욕약
940301	작곡가	940600	자문 • 고분	9400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회서비스
940302	배우	940901	바둑기사	940007	유료배당	940913	대리운전	940919	목품네일
940303	모델	940902	꽃꽃이교사	940908	방판,외란	940914	ЯЦ	851101	병의원
940304	가수	940903	학원강시	940909	기타자영	940915	목욕관리사		

※ 참여자 개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발급할 경우 이름이 마스킹되어 본인 확인이 불가하며 근로 "월"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발급, 제출하셔야 합니다.

- O (3순위)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주가 반드시 작성(서명 또는 날인 필수)
 - * 회사 자체양식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직인(담당자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용주, 발급자 연락처 필수
 - *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월이 고용기간 종료월보다 빠를 경우 발급월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예. '21.09.02.~'21.10.30. 간 근로 후 '21.11.01. 또는 근로 중 10.18. 발급 → 9·10월 근로 사실 증명, 2개월 인정 ≠ '21.09.30. 발급 → 10월 근로예정 증명, 1개월 인정

	<u></u>							
고 용·임 금 확 인 서								
피 고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주	소						
용 자	근무시간		월 12시간	이상 근무 여부 확	인 🗆 여	□ 부		
^ t		.업무 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الحال المال	1 일 임 금 :		원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임			금 지 급 형 태		구분	기본(A)	변경(В)
		월급제	월 급여					
			통상임금					
상-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전화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서명 또는 날인)

< 작성 시 유의사항 >

- 1. 「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피고 용자	성	명		나청년	주민등회	주민등록번호. 990909-1234567		
	주	소	경기도 수원	경기도 수원시 00구 00동 000번지				
	근무/	기간	월 12시간	이상 근무 여부 확	인 📕 여	□ 부		
	주요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매장	내 매대 정리 및	판매, 정리정돈	u o	
ヹ	용 기	간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0	5월 30일	ルス
		Oleleil	1 일 임 금 :		40,000원			
			일당제	월평균 고용일	수 :	10일		
임 금 지 급 형 태		임금지급형태	구분	기본(A)	변경	(B)	중액(B-A)	
		월급제		월 급여				
			통상임금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08월 01일

사 업 장 명: 00편의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00구 00동 00빌딩 1층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 표 자 명: 나사장

전화번호: 010-1234-5678

(서명 또는 날



< 작성 시 유의사항 >

- 1. 「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O (4순위) 근로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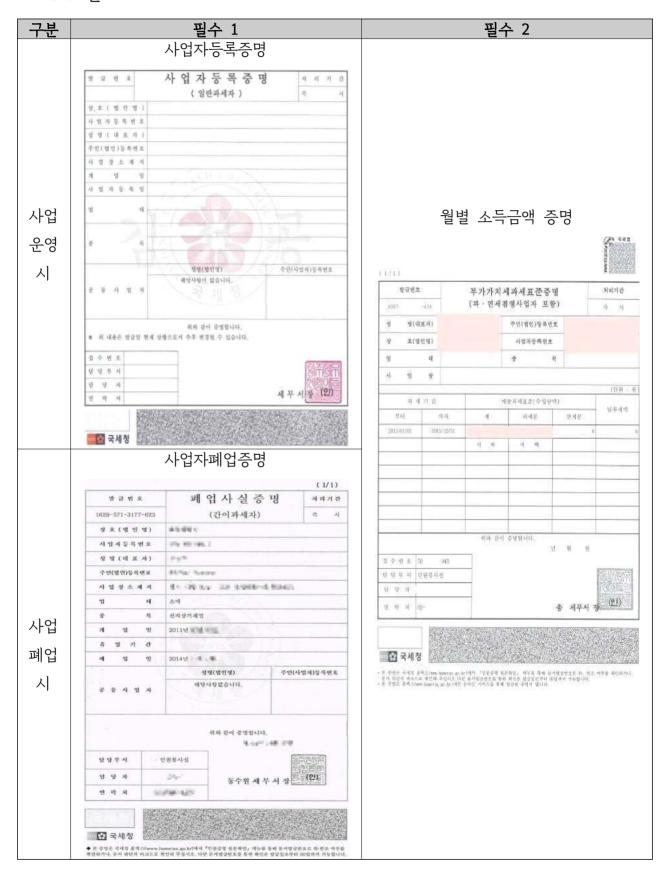
- 계약서 상 개시일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인정 불가, 종료일 또한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 계약 종료 시 직인(담당자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용주, 발급자 연락처 필수 포함된 퇴직 증명서 등 추가 서류 준비 철저 요망

	표준근	로계약서		
5(0)	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	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	일부터 년	월 일끼	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분부터	시분까지 (휴/	메시간: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	주 _일(또는 매	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 (), 없음 ()	
•	원			<u>원</u>
· - 임금지급일 : 매	원 생조 포노 생		* 01 01 71 0 1	원
 지급방법 : 근로지 7. 연차유급휴가 	나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디	병의 예금통장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 고용보험 □			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 교부요구와 관계 				
10. 기 타				1000
- 이 계약에 정함	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이	세 의함	
	년	월 일	Ī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전화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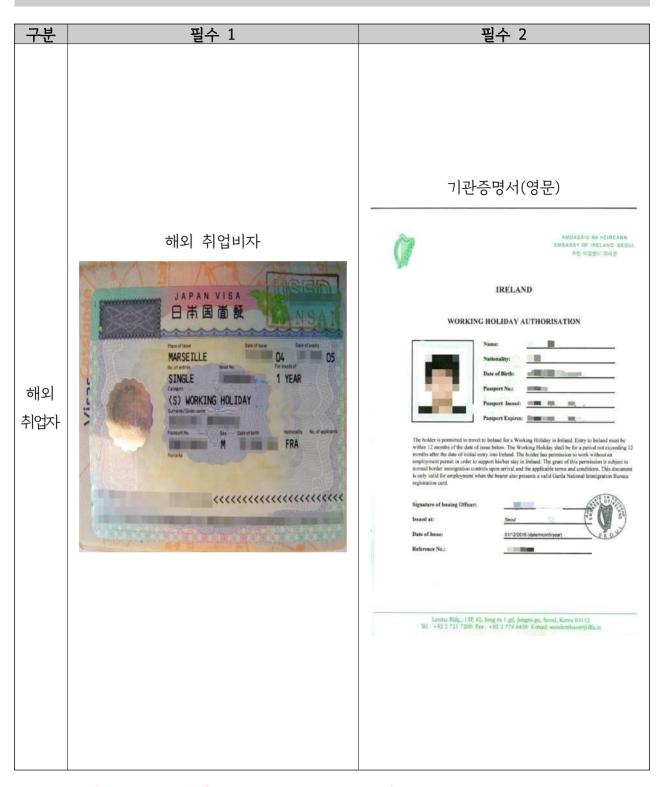
* 3순위·4순위 서류 제출 시 재단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연락 또는 사업장 불시 방문 등을 통하여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이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자영업자 제출서류

O 정부24(www.gov.kr)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5. 해외취업자 제출서류



* 정식 취업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 외 인정 불가 합니다. 기관명의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이 영문이 아닐 경우 번역 공증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증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해지신청서 서식 및 예시

청년 노동자 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총 적립 횟수: 총 회
■ 총 지급신청액: 총 만원 (본인 저축액만 기재)
※ 일반중도해지 시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특별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경기도 지원금 및 이자는 지원기준 및 약정이율에 따라 변경
■ 적립금 반환계좌:
※ 반드시 참가자 본인명의 통장 제출
■ 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일반중도해지 중 택 1, 이후 세부사유 택 1
□ 특별중도해지
· - · · · · · · · · · · · · · · · ·
□ 사망 □ 저축 12회, 근로 12개월 이후 희망
□ 상기 본인은 유사사업(참여자 준수사항 3쪽 참조)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중복참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일반중도해지
□ (12개월 미만) 타 시·도 전출 □ 단순변심 □ 유사사업 참여
□ 장기 해외출국 □ 근로 유지·증빙불가 □ 경제적 문제
□ 미납횟수 초과 □ 교육 미이수 등 기타
상기 본인은 청년 노동자 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연락처: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해지시 반드시 작성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 - 성 명: 나 성 년 - 생년월일: 200005./5. - 주 소: 경기도 00시 00대로 0000 0동 00호

- 총 적립 횟수: 총 /2 회
 총 지급신청액: 총 /20 만원(본인 저축액만 기재)
 - ※ 일반중도해지 시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특별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경기도 지원금 및 이자는 지원기준 및 약정이율에 따라 변경
- 적립금 반환계좌: 통협 00-0000-0000-00 ※ 반드시 참가자 본인명의 통장 제출
- 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일반중도해지 중 택 1, 이후 세부사유 택 1

□ 특별중도해지□ (12개월 이후) 타	시 . 드 거족	□ 배려이므	വിതി	□ e1.	ALAAL
	이 : 그는 선원				
□ 사망□ 상기 본인은 ·		□ 저축 12회,			
사신이 화이된	경우 경기도지	워근이 화수됨	수 있으에 동의	입하니다	
사실이 확인될 ■ 일반중도해지	경우 경기도자	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에 동의	의합니다.	
					참여
일반중도해지	시·도 전출	□ 단순변심		유사사업	참여

상기 본인은 청년 노동자 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년 10월 13일

신청인(대리인): 나 첫 년 나인 년

연락처: 0/0-0000-0000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해지시 반드시 작성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7. 지역화폐 지급신청서 서식 및 예시

O 특별중도해지자는 6. 해지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 또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지역화폐 지급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 작성 시 유사사업 중복참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에 동의하셨습니다.

- □ 환수되는 경기도지원금은 현금 뿐 아니라 지역화폐 또한 포함됨을 인지, 확인, 동의합니다.
- □ 유사사업 참여 외 지역화폐의 타인양도, 현금화 시도 등 유사시에도 환수 됨을 인지, 확인,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사업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역화폐 지급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지역화폐 지급 주체*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상세주소, 카드번호**	지역화폐 지급	3년

- * 김포, 성남, 시흥 거주 시 해당 시·군 담당부서, 그 외 28개 시·군 거주 시 코나아이(주)
- ** 코나아이(주)에서 지급하는 28개 시·군 거주자 중 카드보유자에 한함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역화폐 지급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 ■지급 정보 확인(김포, 성남, 시흥 지역화폐 수령희망 시 작성 불요)
- (본인 명의 **지역화폐 카드**가 있는 경우) **※일반 직불·체크·신용카드 아님** 카드종류() 카드번호 16자리(- - -
- (본인 명의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수령이 가능한 우편번호,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 기재 (해지신청서에 이미 정확한 상세주소를 작성한 경우 추가 작성 불요)

본인은 청년 노동자 통장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지역화폐 지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해지시 반드시 작성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지역화폐 지급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 작성 시 유사사업 중복참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에 동의하셨습니다.

- ☑ 환수되는 경기도지원금은 현금 뿐 아니라 지역화폐 또한 포함됨을 인지, 확인, 동의합니다.
- ☑ 유사사업 참여 외 지역화폐의 타인양도, 현금화 시도 등 유사시에도 환수 됨을 인지, 확인,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사업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역화폐 지급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지역화폐 지급 주체*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상세주소, 카드번호**	지역화폐 지급	3년

* 김포, 성남, 시흥 거주 시 해당 시·군 담당부서, 그 외 28개 시·군 거주 시 코나아이(주) ** 코나아이(주)에서 지급하는 28개 시·군 거주자 중 카드보유자에 한함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역화폐 지급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지급 정보 확인(김포, 성남, 시흥 거주 시 작성 불요)
- (본인 명의 **지역화폐 카드**가 있는 경우) **※일반 작물체크신용카드 아님** 카드종류 (<u>수원페이</u>) 카드번호 16자리(1234 - 5678 - 9876 - 5432) <u>또는</u>
- (본인 명의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수령이 가능한 우편번호, 동 호수 등 정확한 주소 기재 (경기도 수원시 00구 00동 0번값 0, 00아파트 0동 000호 (우편번호 00000))

본인은 청년 노동자 통장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지역화폐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2년 5월 2일

신청인(대리인): 나청년 4년 4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해지시 반드시 작성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8. 지역화폐 관련 안내

- 1) 현금이 필요한 급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경기도 외 타 지역이사 등으로 당장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 ▶ 참여자 본인 사망 외 지역화폐 해당액의 현금지급은 **불가합니다.** 모집 공고 시 지원액 중 "100만 원 지역화폐로 함"을 확인 후 신청, 선정 되신 후 "지원금 중 월 4만 2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정의된 약정서에 서명·동의하시어 참여자로 확정되셨습니다.

정책발행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기한 내 언제든 사용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2) 지역화폐 개인 충전 시에는 언제든 현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가능한가요?
- ▶ 본 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정책발행 시 **환불이 불가**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3) 판매 등 타인 양도 시 환수된다고 하는데 환수는 지역화폐로 하나요? 현금으로 하나요?
- ▶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코나아이 및 김포, 성남, 시흥 측에 환수 요청을 하면 카드 또는 모바일의 잔액이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이미 사용하여 잔액이 없거나 환수 액보다 잔액이 적을 시 현금으로 환수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4) 지역화폐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 ▶ 김포·성남·시흥은 모바일형, 기타 28개 시·군은 경우 카드형으로 추진 중입니다.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모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보유하셔야 회원가입, 사용등록 등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형:** 앱(김포 "착한페이", 성남 및 시흥-"지역상품권 Chak") 설치 → 회원 가입 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 * 본인명의 휴대전화 필수
 - ※ 세부 내용의 경우 3개 시·군별 관련 홈페이지(www.gmoney.or.kr/PageContent.do?menuNo= 010000&subMenuNo=010400&thirdMenuNo=#cnt2)확인 필요
 - **카드형**: 지역화폐 카드 미보유 시 실물카드 우편수령 → "경기지역화폐" 앱설치 → 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 카드 사용
 - *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상담원 연결 후 문자로 수신되는 인증번호 확인을 거칠 시 등록 가능, 문자 수신이 가능해야 하므로 명의자에 상관없이 휴대전화는 반드시 필요

사용처 등 기타 상세 내용은 복지재단에서 안내가 어렵습니다.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확인 또는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문의 바랍니다.

- 5) 10% 인센티브 지급 등 혜택이 좋아 지역화폐를 꾸준히 사용해 왔습니다.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지역화폐도 인센티브가 제공되나요?
- ▶ 본 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정책발행 시 별도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 충전 후 사용 시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 6)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지원금 중 현금은 특별중도해지 접수 2주 내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또한 동일한 시기에 지원되나요?
- ▶ 완전 구비된 해지신청서 접수 완료 후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현금 최대 14일, 지역화폐 최대 30일 내 지급**됩니다.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수 있는 최단 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지급 준비

참여	여자→재단	재단	재단→은행	은행→재단	재단
신	!청서 2종 제출	접수 (또는 보완 요청) 후 서류 검토 * 교육이수 여부 및 저축·근로· 거주 동시충족개월 수 등	참여자 명의 계좌해지 후 재단 명의 계좌이체 요청	참여자 저축액 및 경기도지원금 (14만 2천 원)이체	지원금 분할 (월 10만 원 현금, 4만 2천 원 지역화폐)

2. 지급 요청

- **(현금)** 1주일 단위 협력은행 요청 → 참여자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지역화폐)** 1개월 단위 지급주체(코나아이 및 김포·성남·시흥) 요청

재단→지역화폐	지역화폐→재단	재단→지역화폐	지역화폐
참여자 정보 및 지급액 등 송부	정보 등록/조회 등 준비 후 지급액 입금 요청	입금	입금 확인 후 참여자 지급 (성남·시흥·김포 모바일, 코나아이 카드 발송*) * 카드 보유 시 불요하나 발송 시 시간 소요

- ☞ 예시. 수원페이 카드가 없는 참여자가 1일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 경우,
- (지급 준비) 1일 신청→ 2일 접수(미비 시 보완 요청) → 5일 서류 검토 완료 및 지원금 확정, 계좌해지 후 재단 명의 계좌이체 요청 공문 발송 → (6·7일 주말) 협력은행 8일 이체 및 9일 공문 회신 → 10일 월 10만 원 현금, 4만 2천 원 지역화폐 분할
- (현금 지급) 11일 지급 요청 공문 발송 → 12일 또는 (13·14일) 주말 이후 15일 지급
- (지역화폐 지급) 월 말일 해당 월의 특별중도해지 신청자 지급 일괄 의뢰 → 다음 달 초 코나아이 측 시스템 등록 등 지급 준비 → 카드 우편발송 → 참여자 수령 및 카드등록 후 사용

- 7) 수원페이를 신청했습니다. 급히 하남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하머니카드로 변경 가능한가요?
- ▶ 시스템 정보 입력 등 지급 준비 중일 경우 가능합니다. 즉, 매월 말 일괄 처리 전 요청 시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수령(카드형) 또는 모바일앱 상 충전(모바일형) 등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변경 불가 합니다.
- 8) 수원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금은 하머니카드로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 그렇습니다. 시·군별 사용 카드가 다르므로 신청하시고자 하는 지역 카드를 수령 하셔야 합니다.